2023 -12호(12. 29.)

입법정책담당관

입법 · 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 5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
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1

□ 환경복지위원회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12
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5

□ 농산업경제위원회

1. 「인삼산업법 시행령」 ····· 17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8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독서문화진흥법」 ····· 21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2

□ 교육위원회

1. 「초·중등교육법」 ····· 24
2.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5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 29

Ⅳ. 법령 해석 사례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 39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43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49
2.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 51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현대경제연구원) ····· 57
2. AI와 노동시장 변화(한국은행) ····· 63
3.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개선 모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71
4.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전북연구원) ····· 77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국토연구원) ····· 85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지역소멸 위기, 고향사랑 열풍으로 넘는다(전라남도) ····· 95
2.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의료상황실 본격 운영(경상남도) ····· 97
3. 전국 최초 주민 주도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창립(충남교육청) ····· 99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신공항 건설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필요(국토교통위) … 103
2.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국적 실태조사 검토 필요(여성가족위) ····· 107
3. 지방교부세 차(차)년도 감정산 방안 고려 필요(행정안전위) ····· 111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법인 등에 대한 제재 미조치 관련 ····· 117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8.] [경기도조례 제7815호, 2023. 11. 27., 제정]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년기의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 조성
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사항
6.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③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경기도의 부서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

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이 조례 시행 1개월 전까지 지정하여 고시하고, 총괄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 지원센터 설치 등의 주관부서가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54호, 2023. 12. 18., 제정]

1. 제정이유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사업 내용 (안 제3조, 안 제4조)

○ 교육 및 연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적 창작과 전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관람 및 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체육활동”이란 전인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단련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3.] [행정안전부령 제438호, 2023. 1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 중 개인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7. 3. 시행]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20~2023-11-29)

◇ 개정(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온라인 청문실시(제31조의2(온라인청문)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행정절차법」[2023. 3. 24. 시행]

제31조의2(온라인청문)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이하 "온라인청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3963호, 2023. 1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및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24.6.1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023.4.25. 시행]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2-08~2023-12-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자동차·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의료기관 현황,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 개정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
2. 연간 교통기관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3. 그 밖에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음의 정도 및 주요 소음원
2. 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
3. 거주인구, 공동주택 및 학교·의료기관 현황
4. 소음지도 관할 관청
5.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
6. 그 밖에 소음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④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2023.7.1. 시행]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45호, 2023. 1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하도록 하고**, 조합에 신고된 인삼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을 경작하거나**, 조합에 신고된 인삼 경작지를 **상속 또는 양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3.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2-04~2023-12-18)

◇ 개정이유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개시하였음. 현재까지 생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4만 톤에 달하며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임. 그러나 오염수에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나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으며, 장기간 해양 투기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출하·가공·조리·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 개정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을 “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출하·가공·조리·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산지의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2016. 12. 20. 시행]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27~2023-12-06)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리 · 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정 ·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항습 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 개정문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초상화 등 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 등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적절한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2항에 따라 권고된 보존·관리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

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2-12~2023-12-26)

◇ 제안이유

우리 교육환경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입시·성적 중심 경쟁교육이 심화되면서 학습부진 학생, 정서불안 학생,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담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슈별·기관별·부처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대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절차를 알기 어렵고,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인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 복지 · 건강 · 진로 ·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 ·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2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서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 ·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학업 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37호, 강명원)

□ 배경

○ 2023년 5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에 해당하는 약 152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청·장년층**은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불안, **70대 이상** 노인층은 정서적 불안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대부분 안부 확인이거나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생사 확인 등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과 30세 미만의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443호, 2023.6.13. 일부개정)

□ 도입

○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고독사 개념에 관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내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총 1만 5066명이었으며,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은 매년 1% 내외 증가 추세에 있다.

○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 등의 사전예방 정책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한 대면 안부확인 등에만 머물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 프랑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세대 간 동거계약(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solidair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계약으로 인해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가 가능하고, 계약에 따라 약간의 수입과 작지만 의미있는 쁘띠서비스(Petits services) 등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세대간 동거계약’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다.

□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1. 계약 개념

○ 프랑스의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일명 ELAN 법률」 제117조에 따르면 ‘세대 간 동거계약’이란, ‘사회적 유

대를 강화하고 30세 미만의 자가 쉽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자는 홀로 사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택에 저렴한 금액으로 세를 들어 살 수 있고, 동거하는 동안 쁘띠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는 무상으로 60세 이상의 자의 주택에 살면서, 쁘띠서비스가 포함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그림 1 세대 간 동거계약 구조도



2. 계약 내용

○ ◆ 계약 내용에는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건물의 주소 및 거주 공간의 표면적, 주방·거실 등 공동 공간, 계약날짜 및 기간, 월세 금액, 30세 미만의 자가 제공하는 쁘띠 서비스의 종류, 각 당사자의 의무, 계약종료 절차와 조건 등이 포함된다.

○ 세대 간 동거계약 시 30세 미만의 자가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유사한 주거시설의 일반 임대차 수준보다 크게 낮다. 민간 주택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과 관련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 세대 간 동거계약 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30세 미만의 자가 제공하는 **쁘띠서비스**에는 함께 산책하기, 매주 1회 함께 저녁 먹기, 함께 영화 관람하기, 매주 1시간 동안 대화하기 등이 있다.

- 쁘띠서비스는 수익 창출 활동이 아니며,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각 당사자 간의 종속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60세 이상의 자가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사 보조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양 당사자가 세대 간 동거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표 1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30세 미만의 자	• 60세 이상의 자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 • 주거시설 내에서 평온하게 생활해야 한다. •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라 쁘띠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거주시설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차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
60세 이상의 자	• 30세 미만의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주거시설의 기능과 신체적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물의 위생을 확인해야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동거하는 동안 30세 미만의 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평온한 일상을 보장해야 한다.

- 세대 간 동거기간 동안 각 당사자가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 내용에 명시된 임대 또는 전대 건물 내에서 상호 간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동거기간 동안의 계약내용, 각 당사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제1101조~제1231-7조)에 따른다.

4. 세대간 동거계약 중개협회(Cohabilis)의 역할

○ 프랑스에는 세대 간 동거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세대 간 동거계약 중개협회(이하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세대 간 동거계약에 관련한 다양한 절차 마련과 검증을 하고 있다.

○ 2020년부터 교육부에 의해 공익단체로 인정받은 협회는 프랑스 각 도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파리(Paris)에는 상호약속연대(Le Pari Solidaire) 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협회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 후보자 선정(Sélection des candidats)

- 세대 간 동거계약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30세 미만의 자의 사생활 존중 및 개인 시간 등에 관해 설명한다.
- 세대 간 동거계약을 희망하는 30세 미만의 자와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여, 60세 이상의 자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 60세 이상의 자 및 30세 미만의 자에게 공통으로 따라야 할 규칙이 있음을 상기시킨 후 계약 후보자를 선정한다.

계약조건 설정 및 체결(Formation de binômes)

- 60세 이상의 자와 30세 미만의 자와의 개별인터뷰를 통해 서로 잘 맞는 세대 간 동거계약 당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체결은 임대 또는 전대하려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거지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신의 요구사항과 공동생활 조건에 관해 이야기한 후, 공동생활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동거생활(Accompagnement) 확인

- 세대 간 동거계약이 체결된 후 각 당사자는 한 달간 상호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각자가 느끼는 동거생활이 어떤지에 관해 묻고 살핀 후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협회는 계약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서로의 준수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개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관리에 개입할 수 있으며, 동거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 세대 간 동거계약 관련 법령

1. 「주택, 개발 및 디지털기술변화를 포함한 2018년11월23일 제2018-1021호 법률」

○ 계약의 개념

- 30세 미만의 자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쉽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자가 세대 간 동거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제117조)

2. 「건축 및 주택법전」

○ 계약 규율 및 사전통지

- 60세 이상의 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계약으로 「민법전(code civil)」에 의해 규율된다. (제L.631-17조 제1항)
- 60세 이상의 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세대 간 동거계약 규정에 따라 주택 일부를 30세 미만의 자에게 전대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L.631-17조제2항)

○ 계약 기간 및 월세

- 세대 간 동거계약의 기간과 월세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한다. (제L.631-17조 제3항)
- 세대 간 동거계약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L.631-17조 제4항)

○ 쁘띠서비스 및 비종속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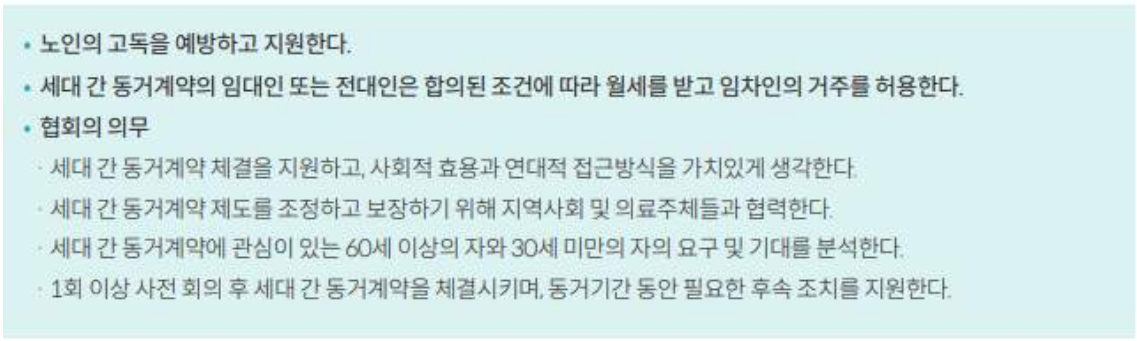
- 세대 간 동거계약에는 월세 이외에도 30세 미만의 자에 의한 쁘띠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쁘띠서비스는 당사자 누구에게도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L.631-18조 제1항)
- 세대 간 동거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30세 미만의 자의 쁘띠서비스로 인해 각 당사자 사이에 어떤 종속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제L.631-18조 제2항)

3. 「세대 간 동거헌장에 관한 2020년1월13일 명령」

○ 세대 간 동거 헌장 집행 책임

- 보건부 장관, 국토통합부 장관은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세대 간 동거 헌장 집행에 대해 각각의 책임이 있다. (명령 제2조)

○ 세대 간 동거 헌장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이를 법제화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60세 이상의 자는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자는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특히, ‘세대 간 동거계약’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함께 산책하기,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등의 쁘띠서비스를 계약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세대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주거문화나 생활양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주거 형태와 연금을 포함한 경제력 수준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들이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 도입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법제처 23-1032, 2023. 12. 4., 민원인]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각주: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3년)에 대한 **취학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6세(각주: 5세 또는 7세 선택 가능)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유예”란 통상적으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바, “면제”와 “유예”는 그 법적인 효과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취학 의무 면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면하여 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도 포함함.)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 시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취학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도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취학 의무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각각 규정하면서(법 제4조), 학교의 교과를 국어·도덕·사회·수학 등으로 정하고(영 제43조제1항),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영 제45조제1항)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이 받는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23-0872, 2023. 11. 21.,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각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각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조), 이하 같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제정(각주: 「산업표준화법」 제1조 참조)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하나로 ‘로봇’ 작업을(제1호라목 36란), 검사원(각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 중 하나로 ‘산업용 로봇’을(제5호카목) 각각 규정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표 제1호라목 36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용 로봇이 아닌 다른 종류의 로봇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율 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용 로봇'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보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 다. (생 략)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 35. (생 략)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 39. (생 략)	

2. ~ 5. (생 략)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362, 2023. 11. 24., 경기도 부천시]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의견23-0277, 2023. 12. 12., 전라남도 고흥군]

【질의요지】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이 사안은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3호 및 별표 3의 1. ③ **예산편성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6. 9. 의견제시 21-0131 참조).

다만 고흥군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서는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제1호),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 등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민간인에 대하여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수당 등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현대경제연구원(2023. 11.)-

1. 개요

○ **(경기 하강 국면 지속과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 4분기에도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전환점 형성에 대한 기대도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동일한 전기비 0.6%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수입이 감소하여 플러스 성장)와 달리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성장 구조가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경기 회복력의 강도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전기비 △2.7%)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경기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98.5p) 저점을 형성한 이후 **6개월 연속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침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비)은 9월 0.1%에서 10월에 다시 침체(△0.8%)되었으며, 1년 전(전년동월비)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폭의 감소세(△4.4%)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가구, 통신기기·컴퓨터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설비투자 침체 장기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투자를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 중이다.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비(△3.3%) 및 전년동월비(△9.7%) 기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는 10월 전년동월비 △19.0%로 '22년 10월 이후 만 1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건설 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하며, 10월에 들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0월 증가율(전년동월비)이 6.8%를 기록하였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10월에 들어 전년동월비 26.6%로 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 **(수출 경기 반등)**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8%로 10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11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여 11월 무역수지는 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EU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11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비 △0.2%로 '22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확연히 축소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외형상 호조 속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제조업 및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장·노년층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하락하였다.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4만 6,000명으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스티키 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고 있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스티키 인플레이션, sticky inflation, 끈적한 고물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수입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9.6%에서 10월에 △10.2%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생산자물가도 9월 전년동월대비 1.4%에서 10월에 0.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경제 심리 부진)**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월에 97.2p로 지난 7월(103.2p)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0월 64p에서 11월 62p로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이다. 다만, 향후경기전망 CSI는 72p로 10월의 70p에서 반등하였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10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건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생산 회복 속도가 약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반등하던 출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수요 여건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서비스업)**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이 9월(전월비 0.5%)에서 10월에 △0.9%로 크게 하락하였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0월 중 토목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건축 부문이 크게 반등(전년동월비 48.6%)하였다.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는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 코로나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복원력이 취약해져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3.5%로 하락하였다. 또한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를 상회**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5%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2.9%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격차(한국—세계)는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0.3%p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0.5%p로 하락하고, 향후(2022~2028년) △1.0%p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처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 회복의 동인을 해외에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회복력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복원력이 과거 경험상의 강도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상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때, 수출 경기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더 약화**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 경제는 고용 지표의 악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위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3.5%에서 10월 3.9%까지 상승하였으며, 구인일자리수도 1월 1,056만 명에서 9월 955만 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소매판매도 4월~8월까지 증가세(전월비)를 지속하였으나, 10월에 들어 △0.1%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5.2%의 호조를 보였으나, 11월 기준 주요 IB들의 향후 미국 경제성장률은 4분기 1.1%, 그리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각각 0.4% 및 0.3%의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한편, **중국** 정부는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나,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 중이다.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LPR(1년 만기)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2%이며, 생산자물가는 △2.6%로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빠른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미래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부진**한 모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추세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2022년 1월 104.69p에서 올해 10월 113.37p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또한, 시장금리(COFIX금리)도 2022년 1월 1.64%에서 11월 4.34%로 높아졌다가 이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10월 3.97%에 달하고 있다. 즉 고물가・고금리가 동반되면서 가계가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급감한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실질 구매력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1월(90.7p)에서 7월(103.2p)까지 상승하며 기준치 100p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97.2p로 기준치를 하회 중이다.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3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 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견인되지 못할 경우 **'L' 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U' 자형 저속(低速) 회복(2024년 상저하고) 시나리오는 수출이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경기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되어 2024년 1분기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 자형 침체 장기화(2024년 상저하저) 시나리오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2024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이다. 현재로서는 'U' 자형 저속(低速) 회복 경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 예상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세가 미흡할 경우 'L' 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시사점

○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2024년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2. AI와 노동시장 변화

-한국은행(2023. 11.)-

Ⅰ. 검토배경

○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지난 10년 간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I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통계적인 패턴을 식별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로, 인간이 미리 제시한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자동화 기술(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등)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이로 인해 주요국에서는 3개 기업 중 한 곳이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42%에 달하는 기업이 향후 AI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게 된다. **AI는 생산성 및 업무 환경의 개선**(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고용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West, 2018; Suskind, 2020)**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AI가 노동시장 내 다양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노동 및 교육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았다.

- **어떤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가?**
-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시사점은 무엇인가?**

Ⅱ. 선행 연구

○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일자리가 AI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Webb(2020)과 Felten et al.(2019)의 직업별 AI 노출 지수가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Webb(2020)은 해당 지수를 활용하여 **고학력·고임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였다. McElheran et al.(2023)은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규모별로 ‘AI 격차’가 나타남을 보였다. 한편, Cook(2023)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뿐만 아니라 AI 기술로 보완되거나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도 언급하며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 또한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한 다양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Acemoglu et al.(2022)은 AI에 많이 노출된 기업일수록 AI 관련 채용 공고를 크게 늘리고 AI와 무관한 직무의 채용을 줄이고 있음을 보였다. Webb(2020)은 로봇·소프트웨어의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일자리의 고용 비중 및 임금 상승률이 감소함을 보여, AI도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Albanesi et al.(2023)은 유럽 자료를 활용하여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의 고용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젊은 층, 고숙련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직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편 현재의 규제 없는 AI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White House(2022)는 **AI로 인한 임금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Acemoglu et al.(2023)은 AI가 근로자 대체, 근로자 협상력 감소 등의 부정적 경로로 발전하지 않고 '인간 보완적' 경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AI 기술이 새로운 업무와 역량을 창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본고는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일자리가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Webb(2020)의 AI 노출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변환하여 우리나라 직업 중 AI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일자리를 식별하였다. 또한, 로봇·소프트웨어 노출 지수를 활용하여 AI가 관련 일자리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본다. 마지막으로 AI 규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Ⅲ. AI 노출 지수

1. 직업별 AI 노출 지수

○ 어떤 일자리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지 살펴보기 위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활용하였다. 관련 문헌에서는 Webb (2020)과 Felton et al.(2019)의 자료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는 Webb(2020)에 기반하여 국내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하였다. Webb(2020)의 자료는 AI 기술 외에도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출 지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직업별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하나의 직업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우선 업무 단위에서 AI 노출 지수를 측정한다. 특정 업무가 AI 기술에 의해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내용 설명서와 AI 관련 특허 제목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동사-명사 조합을 통해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의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을 진단한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AI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여 노출 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업무 기준 지수를 측정한 후에는, 특정 직업의 업무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직업 기준 지수를 산출한다. 한편 국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구하기 위해 미국직업분류(O*NET)에 기반하여 작성된 AI 노출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소분류)로 변환하였다.

○ 한편, 향후 분석에서 AI 기술의 노동시장 파급력을 유추해 보기 위해, 이미 상용화되어 노동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인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업별 노출 지수도 함께 산출하였다. AI 노출 지수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노출 지수를 측정한다(Webb, 2020). **직업별로 산업용 로봇 노출 지수와 AI 노출 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산업용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와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는 AI 노출 지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AI는 인간이 러닝 알고리즘을 설정하면 AI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또는 실험으로부터 학습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한 규칙("if-then")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AI와 소프트웨어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두 기술 간 접점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와 AI 노출 지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어떤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가?

○ **국내 일자리 중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전체 일자리의 12%)로 추정**된다. 이는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을 식별하고, 동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더한 결과이다. 한편 임계점을 상위 25%로 확대할 경우, 해당 일자리는 약 398만 개(전체 일자리의 14%)로 늘어난다.

○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일자리**에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조작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등**이 포함된다(<표 1> 참조).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 기술자는 생산 공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데, AI 알고리즘이 기술자를 대체하여 공정 최적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일자리(단순 서비스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는 대면 접촉 및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표 1> AI 노출 지수 상위 및 하위 직업[1]

상위 직업	하위 직업
화학공학 기술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발전장치 조작원	대학교수 및 강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상품 대여 종사자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종교 관련 종사자
재활용 처리 장치 조작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주: 1) 직업 소분류(153개) 기준
자료: 저자 계산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 노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업의 무선 네트워크, 제조업의 장비·모니터링 솔루션 등에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은 예상대로 AI 노출 지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여타 기술과 비교할 경우 AI 노출 지수는 상대적으로 숙박음식업에서 낮고, 정보통신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 **임금수준과 학력수준별**로 보면,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는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여타 기술(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AI 도입 및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과거의 기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의 AI 노출 지수가 여성 일자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술과 마찬가지로 남성 일자리가 AI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AI 노출 지수가 낮은 대면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별로는 AI 노출 지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며 기업의 AI 활용도 여전히 초기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AI 기술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개별 산업에 어떻게 정착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ChatGPT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생성형 AI에 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AI와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도입될지도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 다만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Acemoglu et al.(2020)은 온라인 빈일자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술에 많이 노출된 기업은 AI와 관련 없는 채용 공고를 줄이고 전체 신규 채용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내 직무 수요 및 채용 규모가 AI의 영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AI가 산업 및 직업 레벨에서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Hui et al.(2023)은 **ChatGPT 도입 이후 단기적으로 지식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한편 Webb(2020)은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도입이 관련 일자리의 고용 및 임금 감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다음, 유사한 효과가 AI 도입 이후에도 나타날 것으로 유추하였다.

○ 본고에서는 Webb(2020)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 도입의 잠재적 영향을 유추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도입이 지난 20여년 간(2000~2021년)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직업-산업-연도 cell(산업과 직업은 중분류 기준)을 만든 후 2000년과 2021년 cell을 비교하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triangle y_{o,i,t} = \alpha_i + \beta \text{Exposure}_o + \gamma Z_{o,i} + \varepsilon_{o,i,t}$$

○ $\triangle y_{o,i,t}$는 2000년과 2021년간 고용 또는 임금의 차이이다. 고용의 차이는 2000년과 2021년의 cell 간 취업자 수 비중의 DHS 변화에 100을 곱하여 사용하였고, 임금의 차이는 각 cell의 평균 임금의 log 값에 100을 곱한 후 cell 간 차이를 구하였다. Exposure_o는 직업별 로봇(소프트웨어) 노출 지수이며, $Z_{o,i}$는 산업고정 효과와 직업별 임금수준(2000년 기준)을 의미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였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서비스업 활용도가 높지 않아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전산업에 대해 추정하였다.

○ **산업용 로봇**의 경우, **노출 지수가 10 percentile 높은 경우 고용 비중이 12%p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산업 내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개별 산업 내에서 산업용 로봇에 더 노출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고용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Acemoglu & Restrpo(2020)에서 밝힌 산업용 로봇에 의한 고용 및 임금 감소와 일관된 결과이다. Webb(2020) 역시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용 로봇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과 임금 상승률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였다. 다만 **미국과 비교할 때, 산업용 로봇 도입에 의한 고용 감소 및 임금 상승률 둔화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제조업의 산업용 로봇 도입 비중이 세계 1위인데 기인한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높아, 산업용 로봇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가 10 percentile 높은 경우 고용 비중은 7%p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미국 자료를 활용한 Webb(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산업용**

로봇보다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다.

○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도입된 이후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진 점에 비추어볼 때, AI 역시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력이 AI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AI 노출 지수가 10 percentile 높을 경우, 관련 일자리의 고용 비중은 7%p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2%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다만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AI 기술을 개발·유지하는 고생산성 일자리와 AI 관련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전반적인 노동수요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효과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체효과는 특정 그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는 AI 관련 특허 정보와 직업 정보를 활용하여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를 식별하였다. 주요 업무의 상당수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전체 일자리의 12%)로 추정되었으며,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과거 기술과 달리 고임금·고학력 근로자가 AI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년간 산업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진 추정 결과에 기반한다.

○ 다만 새로운 기술은 신규 업무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전반적인 노동수요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효과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체효과는 특정 그룹에 더욱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의 시급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우리 사회가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혜택의 크기는 근로자들의 적응력과 정책 디자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AI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과 다른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물론 **STEM(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matics)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soft skill에 대한 수요가 큰 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는 반복적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인지적 업무까지 대체할 수 있기에,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soft skill이 앞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Deming, 2017b

○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업무와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다주지만, **소비자 후생 감소, 이윤 독점 심화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AI가 적절한 규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개선 모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11.)–

1. 읍면동 재난안전기능 강화의 필요성

□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

○ 기존 중앙의 하향식(Top-Down) 재난안전 관리체계는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대응에 한계를 보임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나 현장의 초기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그 하부기관인 읍·면·동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기초 자치단체와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강조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그 피해 유형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재난안전 수요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즉, 재난안전 관리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 특성 즉, 시·군·구 재난안전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강화 모델을 도출**함

□ 인력증원, 기능재배치, 민관협력 등 지역 맞춤형방안 모색

○ 공공부문 인력동결을 전제로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로는 민관협력과 주민자치 및 복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부터 장기로는 재난안전 전담 인력의 읍·면·동 배치까지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읍·면·동 재난안전관리 기능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지역맞춤형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유형화

□ 지역안전지수에 근거한 시·군·구 군집분석

○ 지역안전지수를 통한 재난안전 수요 및 공급을 파악하는데,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를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기능의 수요측면, 경감지표와 의식지표를 통해 재난안전기능의 공급측면을 파악함

-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은 동일 유형의 자치단체 간 비교 가능하므로 시·군·구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시도함

표 1. 지자체 재난안전 기능 수요 및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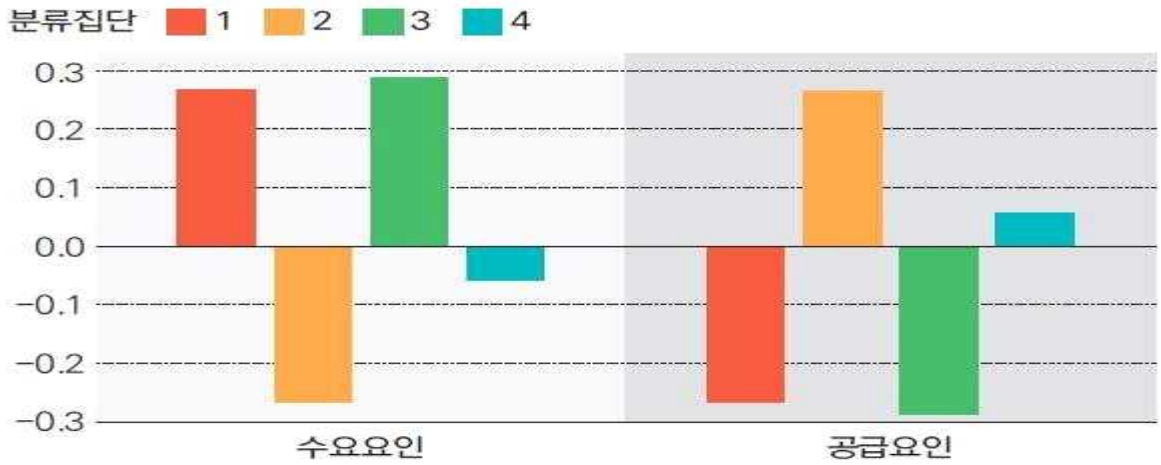
재난안전 기능	조작적 정의	활용 데이터
수 요	•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피해,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측면	• 6개 영역 지역안전지수의 위해 및 취약지표
공 급	•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하는 활동 측면	• 6개 영역 지역안전지수의 경감 및 의식지표

* 자료 : 연구진 작성

○ 227개의 시·군·구 중에서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지역을 선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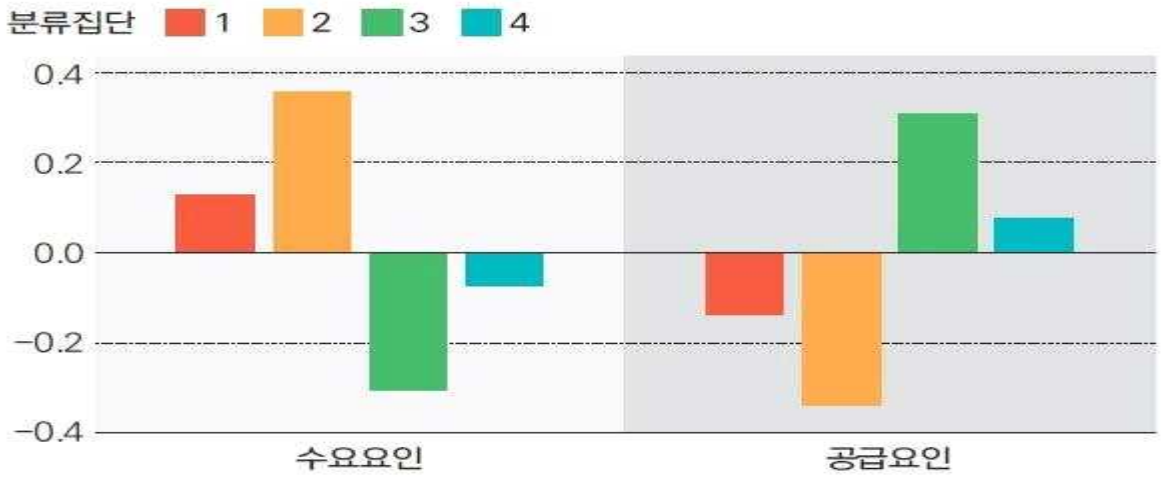
- 시 지역의 경우 집단3과 집단1이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그림 1. 시지역 군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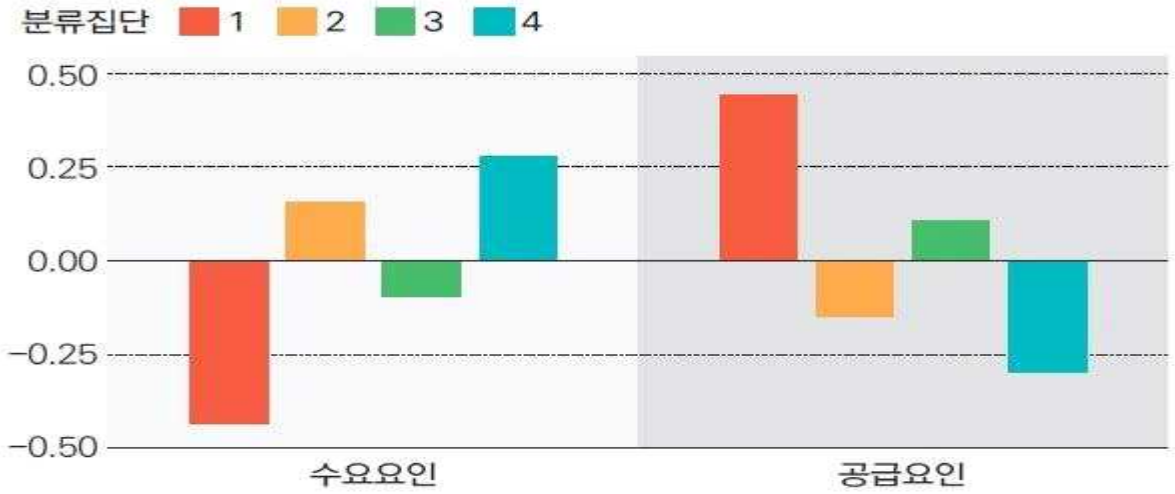
- 군 지역의 경우 집단2와 집단1이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그림 2. 군지역 군집분석 결과



- 구 지역의 경우 집단4와 집단2가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그림 3. 구지역 군집분석 결과



□ 자연재난 수요를 고려하여 2차로 지역을 유형화

○ 심층분석 지역을 추출하여 시·군·구별 3개씩 심층 분석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면담조사를 수행함

- (시 지역)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남 보령시가, (군 지역)에서는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인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구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남구가 선정

4. 지역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기능 강화전략

□ 재난예방 및 대비 단계의 다양한 정책수단 검토 및 읍·면·동별 적합한 모델 탐색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재난안전거버넌스 활성화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이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관협력의 구체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지역마다 재난안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종류, 참여 수준과 방식 등이 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안되어야 중앙에 의한 획일적 개편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음

□ 재난안전 전담 기구인력 신설형

○ 재난안전 발생 수요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은 '도시형', '일반 시', '특·광역시 자치구' 유형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읍·면·동 재난안전 전담팀을 조성하여 공공주도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함

- 풍수해나 폭염,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도심의 안전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취약지역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확장될 수 있음
- 고시원, 반지하, 좁은 골목, 높은 경사 등 주거취약가구 비중이 높고, 1인가구, 노인, 장애인,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규모가 많음

○ 행정직, 방재직, 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함: 방재안전직을 적극적으로 충원·배치하여,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인사고과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함

□ 신규 업무분장형

○ **재난안전 수요가 공급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시형인 '일반시'와 '특·광역시의 자치구', 농촌형인 '일반군' 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을 공식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방식을 취함

○ 읍・면・동에 별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조직구조에 재난안전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공식적으로 분장하는 방안임

○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증원된 인력에 재난안전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재난안전 기능을 관리하도록 함

- (도시형) 행정팀 내 주민자치 업무인력은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관리하기 용이함

- (농촌형) 맞춤형 복지팀 인력에 재난안전 업무를 분장하는데, 복지 및 안전취약계층의 중첩 정도가 도시형에 비하여 농촌형이 큰 편이기 때문에 업무 역시 중첩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자원 활용형

○ **재난안전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형’, ‘농촌형’에 적용하되, 지역 유형에 따라 협력을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민간자원 종류가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 도시형의 경우 이・통장,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링단, 안전보안관 등 다양한 안전관련 민간단체 활동이 뚜렷함

- 농촌형의 경우 안전과는 관련이 없어도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로 이・통장,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내 근린 단체 활동이 뚜렷함

○ 다만, 읍・면・동 재난안전 민관협력기구 통솔 역할을 해당 읍・면・동 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민간단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상시에는 민간 주도의 주민 안전관리, 주민 상호 간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재난 시에는 읍・면・동 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하고 긴밀한 협조가 유효함

- 즉, 읍・면・동장은 사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단체별 역할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사고 발생 시 단체 역할을 독려하고 단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5. 3가지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시점별 전략 전환

○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직신설형을 장기적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신규업무분장형과 민간자원활용형을 제시**함

- 민간자원활용형에서 읍・면・동장이 공무원과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정자(coordinator)와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할 때 민관협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 중기로는 읍・면・동의 공식적 업무분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사무・업무 들을 공식화하는 신규업무분장형을 제안함
- 조직신설형은 장기로는 필요한 지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선별하여 적용하되, 이는 현 정부의 공공 인력동결 기조를 고려하여 이루어짐

4.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2023.11)-

1. 가까워진 주4일 근무제 사회

□ 근로시간 단축으로서 주4일 근무제

○ 주4일 근무제는 주5일 근무를 4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일수 내지는 근로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개인 측면에서는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웰빙(well-being)'을 촉진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기대하는 일련의 흐름을 표방함

○ 주4일 근무제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화와 그 방식에 있어 여러 논쟁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스펙트럼은 [표 1]과 같음

- **형태**는 **근로일수만 단축**하거나, 혹은 **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을 함께 단축**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취하는 등 방법**이 다양함
- 근로일수는 주4일, 주4.5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경우 15시간부터 69시간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됨

[표 1] 근로시간 관련 제도화 영역 및 논쟁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내용</th></tr>
<tr><td>주요이슈</td><td colspan="6">법정 노동시간: 40시간 → 35/32시간으로 단축
주당 연장근로 제한: 52시간 → 48시간으로 단축
유급휴가: 15일 → 20/25일로 확대</td></tr>
<tr><td>근로일수</td><td colspan="6">주4일 – 주4.5일 – 주5일 – 주6일</td></tr>
<tr><td rowspan="3">근로시간</td><td>15시간</td><td colspan="2">32/35시간</td><td>40시간</td><td>48/54시간</td><td>52시간</td><td>60/69시간</td></tr>
<tr><td>초단시간</td><td colspan="2">라이트 풀타임</td><td colspan="2">과잉 풀타임</td><td colspan="2">과로</td></tr>
<tr><td>최소노동
문제</td><td>1일
6시간
주4일</td><td>1일
7시간
주5일</td><td colspan="2">ILO, EU
주 48시간</td><td>한국
주52시간</td><td>과잉노동
문제</td></tr>
</table>

출처: 전북연구원(2023)의 김종진 발제문 참조

○ 근로일수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똑같이 주 40시간이어도, '일8시간, 주5일근무(월-금)'가 아닌 '일10시간, 주4일근무 (월화수목)'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3일(금-일) 휴무가 주어져 장거리 여행 등이 가능함

□ 미래를 앞당기는 실험과 결과

○ 주4일 근무제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세계 각국이 COVID-19

팬데믹 시기를 통해 원격근무 및 단축근무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과 각종 사회실험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함

○ 국내에서는 외국의 주4일제 실험과 법률개정 사례 등이 소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1년 대선에서 주4일제 및 주4.5일제 관련 공약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됨(김종진, 2023)

[표 2] 주4일제 관련 국내·외 실험

국가명	관련 사례	
영국	심플리비즈니스(Simply Business), 야톰은행 등	
뉴질랜드	유니레버 실험(1년)	
호주	옥스팜 오스트랠리아(6개월)	
스페인	통신기업 '테렐모니카' 직원 10% 대상 실험	
프랑스	마시프, 인피그, 아이기스, 모니크라누, 라발, 그루파, 엉투르프리즈 등	
스웨덴	도요타 서비스센터,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 Brath, 스톡홀름 앱 개발회사 Filimundus 등	
일본	MS지사(2019년), 금융그룹 '미즈호파이낸셜(주3일, 4일), 파나소닉(2022년)	
미국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뉴욕 등 지방정부(평일10시간 ,2008년)	
국내	주4일제	휴넷, 뮬라웨어, 엔돌핀커넥트, 밀리의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휴넷, 세브란스병원(시점 사업: 2023년)
	주4.5일제	토스 계열사(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토스), CJ ENM, 금성출판사 등
	격주4일제	카페24,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 바로고, SK텔레콤 등

출처: 김종진(2023) 참조

○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1%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진행**함(연간 392억원 투입)

-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여 유럽 등에서 주목하였으며, BBC에서 "엄청난(overwhelming) 성공" 을 거뒀다고 평가함
- Haraldsson & Kellam(2021)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해소**되었고, **일-삶의 균형이 개선**됨
- 참여자는 남는 시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활동과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혼남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 시간이 증가**하였고, **업무 생산성 역시 증가**함

○ 주4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화된 COVID-19 시기의 외국 사례로는 스페인, 벨기에 등이 있음

- **스페인**은 2021년 주4일제 파일럿 실험 프로젝트를 시행함. 3년 동안

"주4일 32시간 근무제(임금 10~2% 삭감)"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 약 676억 원이 투입되었음. 200개 회사에서 노동자 3~6천 명이 참여하였으며, 1년 차에는 비용의 100%, 2년 차는 50%, 3년 차는 33%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벨기에**는 2022년에 연립정부의 노동개혁안으로 주4일 근무제(3일 휴일제)를 법제화함. 주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정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였음
-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기관 협력단체인 '글로벌 주4일(4 Day Week Global)'의 시범 프로그램에 북미 35개 기업, 다국적기업 20여 개가 참가함. 현재 근로자 2천여 명이 급여 삭감 없이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함(ITDAILY, 2022)

○ **국내 사례**로는 최근에 진행 중인 한국세브란스병원이 대표적임

- 한국세브란스병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험군(참여자)과 대조군(비참여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험함
- 주4일제 참여자인 **실험군**은 **퇴근 후 체력 저하, 업무 스트레스, 일의 피로도 등이 개선**되었으며 육체적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보고됨
- 실험 참여자는 주5일제 대비 휴일의 여가시간이 1시간 8분, 자기계발 시간이 44분 추가되었고, 시간 활용에 있어 취미·스포츠(25%), 여행(30%), 교육(20%) 등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나아가 월 평균 실근무시간이 38시간 40분(1일*9시간 40분*4주)으로 감소하였으며, 출퇴근 교통 시간은 월평균 4시간 8분(1일*1시간 2분*4주)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와 전망

□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의 전환, 주40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를 전망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철성, 2014; 이용관, 2014; 정연·김수정, 2021; 김난주, 2022; 고혜진·정해식, 2023)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오선정, 2016; 주은선,

2016; 신용우・조영일, 2019; 김대일, 2021; 전혜영, 2022)로 구분됨

○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에 관한 각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주5일제 또는 주40시간 시행 이후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장시간 근로가 피로 누적과 과로를 일으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하며, 이러한 노동생산성 저하로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등 일-가정 양립을 불가하게 만들며, 이는 기업경영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로 연결된다고 주장함

○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들은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포착하여 삶의 질 개선에는 효과가 미흡한 반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분석을 내놓음

-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증가한 잔여시간이 생활노동시간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 고용의 형태(임시직, 특수고용 등)나 업종(서비스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경고함

□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전환 당시의 사회변화와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는 다를 것으로 전망됨. **주3일 휴무는 여가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됨

○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통해 일-삶의 균형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 및 환경개선, 여가시간 증가, 건강 개선 등의 사회적 효과가 기대됨

○ 주4일 근무제로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는 서비스산업, 여가산업, 제조업, 보건・의료업, 소매업, 교육산업, 금융업 등이 있음. 산업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관점에서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면 크게 임금 조정, 소비자의 지출 변화, 경제성장, 정부 정책 등에서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표 6]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경제적/정책적 측면

분야	영향 내용
임금 조정	근로시간 감소가 임금 조정과 연동되는 것인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만을 조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측 가능함. 사업주는 이에 따르는 예산 제약을 고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관한 보상 및 지원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소비자 지출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의 증대는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가계부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지출 패턴이 다시 다양한 산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역경제 성장	국가 GDP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언하기 어려움. 일-삶의 균형 개선에 따라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잠재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기적 생산량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음. 또한 제도설계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증대될 수 있어 고용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함
정부 정책	정부는 주4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시장과 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임금 수준 조정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 종합하면, 주4일 근무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도전과 기회를 모두 가져 다각적인 측면이 있음. 업종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응력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경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이 이러한 전환 결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3. 전북,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

○ 주4일 근무제에 70% 이상 찬성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도시화를 추진함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21년)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에 대해 찬성 51%, 반대 41%**로 나타남. 20~30대와 임금 근로자에서는 찬성 의견이, 60세 이상과 자영업자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음
- **주4일제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은 창의성과 자율성, 유연성,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창의인재를 지역에 유인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며, 창의인재의 입지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미래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Florida, 2005)

○ 전북도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개발

- 스웨덴처럼 유럽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외에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질병 휴가 감소, 노동자의 행복감 상승과 같은 효용이 있다는 평가를 내림
- 도내에서 주4일 근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전북형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북특별법 특례(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특례)로 개발**

-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 전에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하는 특례가 담겨 있음. 이처럼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전북에서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례를 전북특별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는 주52시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조문은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내용은 없음**. 주4일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예: 서울 및 경기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실행함
- 근로시간 단축과 자발적 임금 감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지역형 일자리 사업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음

□ 주4일제 맞춤형 건강·취미·여행 기반 구축

○ 주5일 근무제가 여가 행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여가 비용이 크지 않은 개인 휴식, 가족 여행, 레포츠 등 여가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21년)에서 주4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에 하고 싶은 것을 조사한 결과, 건강관리, 취미생활, 여행 등 순서로 나타남

○ 주4일제에 따른 **휴일 확대는 전북 여가산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음

- 주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조사(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실시하거나, 실시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는 '해외 여행'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주4일제 확대가 여행 및 관광인구 증가로 이어져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회로 작동할 여지를 보여줌
- 반면, 지금까지 2일이라는 짧은 휴무기간으로 인해 주말을 활용한 국외

여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일 휴무 시 근거리 국외여행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여행, 특히 **전북으로의 단기 여행 관광객이 줄어드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 전북 여가산업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여가 진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표 11]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전북 여가산업의 환경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 건강·힐링 관련 여가 자원 풍부 · 취미생활, 문화체험 등 경쟁력 ·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전략 추진	· 인구 감소로 여가서비스 종사인력 부족 · 도민의 여가 역량 부족 · 여가 기반 시설 및 콘텐츠의 부족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등 전북특별법 특례 · 저렴한 여가 콘텐츠 개발 가능 · 트라이포트(항공·항만·고속철도) 구축	· 국외여행 증가로 도내 관광객 감소 · 여행비용 증가로 관광 수요 감소 및 변화 · 여가의 양극화에 따른 대응 전략 부재

- **(강화(SO)전략)** 건강・취미생활 연계 및 가족 단위의 저렴한 체험 여행객 등을 유입하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휴일 증가에 따른 **여행객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보완(WO)전략)** 도민이 즐기는 여가가 외지인에게 매력적인 여가 콘텐츠임. 도민의 여가 역량을 키우는 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부족한 여가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여가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공**해야 함
- **(극복(ST)전략)** 산・들・강・바다의 자원과 한국적인 문화를 접목한 특화 콘텐츠(한국문화체험, 웰니스관광, 치유문화 등) 개발로 **고급 여가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함
- **(방어(WT)전략)** 여가의 양극화에 대비하여 고급 여가시설 구축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저가이면서 질이 좋은 여가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저가 여가 중심지로 인기를 얻는 마케팅이 필요**함

□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가시장 선점 방안 마련

○ 여가시간의 증가는 여가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장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맞는 **지역특화 여가 상품을 개발하여 브랜드화**하여야 함

○ 여가시간 증가와 관련하여 전북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고급 및

중저가 관광,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교육, 자연 친화적 치유, 레저스포츠 등 건강 및 취미생활, 4도 3촌에 따른 주거환경 등을 꼽을 수 있음

[표 12]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장 영향과 지역의 선점 대응 예시

분야	변화 전망	대응 방향
여행	▪ 1인 가구 증가, 혼자서 살아가는 생활양식 선호 등 나홀로 여행(한달살기 체험 등) 증가 전망 ▪ 여가시간 증가에 비례하여 여가비용이 증가, 중저가 여행 수요 증가 전망(여행의 양극화)	▪ 1인가구 타겟의 여행 전략 마련 ▪ (예) 1인 가구 위한 H.E.A.T. 상품: 헬스케어·취미(Health care, Hobb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악세서리(Accessory), 여행(Tour) 상품·서비스 ▪ 고가 및 중저가 여행상품·서비스 개발
교육	▪ 유아·아동의 주3일 휴일 교육이 중요: 학교 교육 대체하는 유아·아동 대상 사회교육 확대 전망 ▪ 혼자서 살아가는 생활양식과 혼자서 즐기는 여가가 확대됨에 따라 원데이클래스 시장의 급증	▪ 유아·아동·청소년의 방학캠프 외 주말 연휴(3일) 캠프 등의 콘텐츠 개발: 환경+예술+기술+언어 등 융합형 ▪ 워케이션의 개발 확대, 원데이클래스형 교육여행 콘텐츠 개발과 명성 있는 예술인의 지역 유치 등 추진
치유	▪ 산, 캠핑장, 산림욕장 등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인구 증가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가 및 자연 친화적인 여가 욕구가 증대하고 관련 시장 확대 전망 ▪ 반려동물·식물과 교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	▪ 주민이 먼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공원, 생활 속 여가공간 마련 ▪ 개발되지 않은 전북 생태자원을 활용, 힐링·치유 연계형 길, 캠핑장, 산림욕장, 휴양림 등을 다양하게 개발 ▪ 반려동물·식물 연계하는 치유콘텐츠 개발과 교감·휴양하는 장소 조성
취미	▪ 모든 사업장이 주5일제 시행(2011년) 이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취미 오락 관련 지출액(신용카드) 1.96배 증가 ▪ 주4일제에 따른 희망 여가 조사에서 운동과 취미가 1·2등 차지	▪ 인터넷·게임, 미용, 애완동물보기, 독서, 쇼핑, 외식, 유흥 등 취미오락 분야 매출 증가 대비 분야별 대응책 마련(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력 확보) ▪ 레저 스포츠(서핑·패러세일링·낚시·익스트림스포츠·골프 등) 유치 전략 추진
주거	▪ 4도3촌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주거단지가 확대되고, 이들과 관련한 커뮤니티 형성과 생태계 구축 ▪ 농촌 주택에서의 3일이 아닌, 캠핑카 등을 활용한 4도 3촌 확대	▪ 관계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하여 4도3촌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마련: 택지개발 활성화, 독자 커뮤니티 구축 지원 ▪ 정주도시가 아닌, 유연한 도시로서 리퀴드폴리탄(Elasti City, Liquid Politan)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분야별 대응책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특화사업을 시군별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분야별 브랜드로 구축한 뒤 각 시군의 특화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예) 동부권 산림을 활용한 ‘산림 활용 레포츠(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오리엔티어링 등) 특화 지역’, 농어촌 빈집·고택을 활용한 ‘마을호텔’, 숲을 활용한 ‘반려동물 휴양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문 ‘예술놀이캠프’ 등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연구원(2023. 11.)–

1.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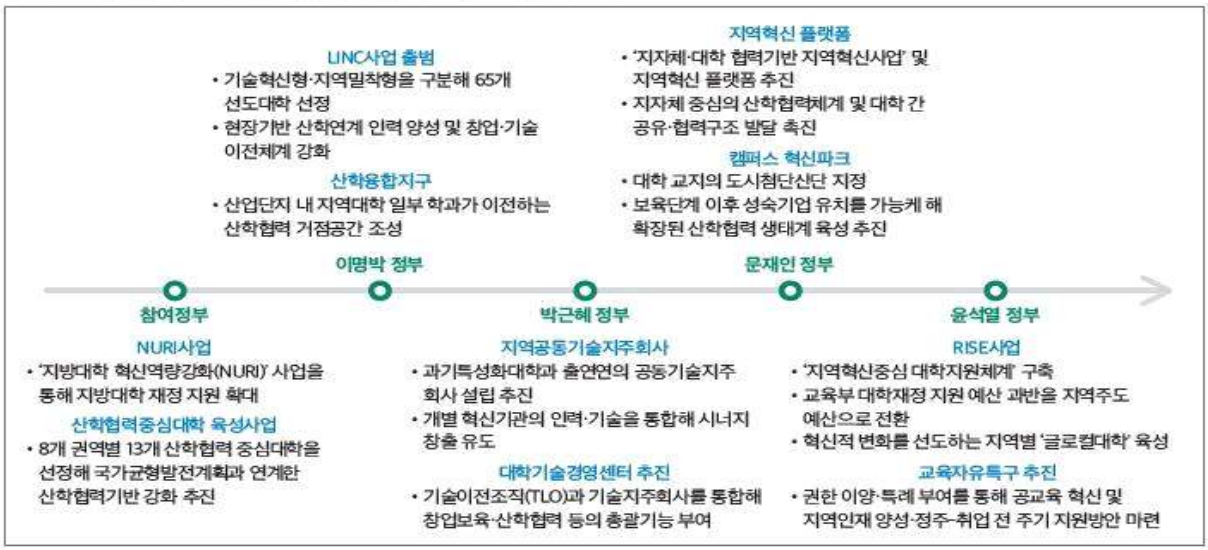
□ 균형발전을 위한 과거 지방대학 육성정책

○ 산업화 시기 이래 국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 시행

- 이를 통해 ①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② 지역산업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전문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었고, ③ 대학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그림 1 각 정부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특징 비교



□ 기존 정책의 주요 한계와 원인

○ **(대학 간의 협업체계 미흡)** 서열화된 평가체계와 구조 조정의 압박 탓에 지역대학 간 협력·공유보다는 **경쟁과 각자도생의 관계 고착**

- 대학 간 분업구조가 발달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의 중복성과 분절화가

심화되었고, 지역 공동의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집합적인 행동을 조직하기 어려운 한계 노출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미흡)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식적·단기적인 산학협력 관행**으로 인해 지역산업과의 내실 있는 협력관계 형성이 부진

- **대학은 중장기 기초연구를 지향**하지만 **기업은 현장에 바로 도입이 가능한 응용기술을 요구**하는 등 **기술 공급처와 수요처 간의 기술적인 기대 수준 불일치 발생**
- 대학의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스케일업 R&D가 필요하지만 논문 등 가시적 실적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산학협력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큰 한계 존재

○ **(산학협력 성과의 지역 정착 미흡)**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및 사업화 성과의 상당 비중이 수도권 등 지역 바깥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

- 고숙련 인력과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환경이나 **경쟁력 있는 연관산업이 지방에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 창의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환경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도 지역정착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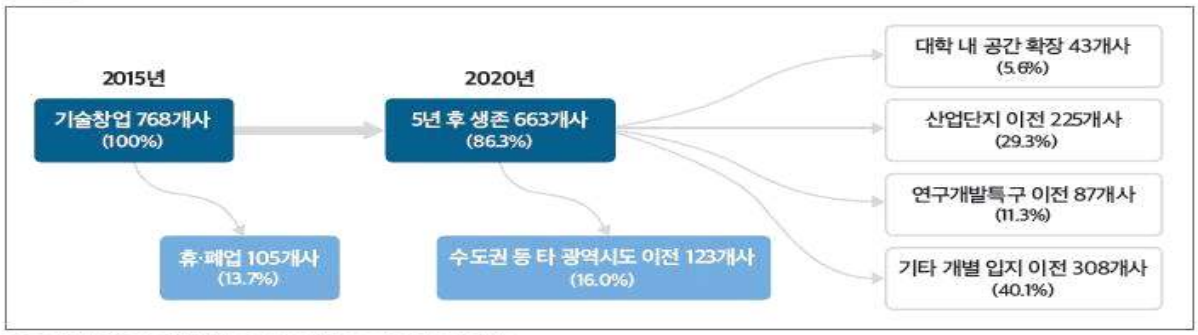
2. 지역혁신체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실증분석

□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

-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기술창업의 70.3%는 5년 후 동일 광역시·도에서 사업을 확장했으며, 특히 산업단지(29.3%), 연구개발특구(11.3%) 등 정책적으로 조성된 계획입지에서 성장경로를 이어가는 지리적 패턴 관찰
- 13.7%는 5년 이내 휴·폐업하였고 16.0%는 수도권 등으로 이탈했는데, 지역 이탈기업의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았으나, **지역에 잔존한 기업에 비해 수도권 이탈기업의 성과가 우세**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그림 2 지방대학 출신 기술창업의 5년 후 사업장 이전 경로(2015 ⇒ 2020)



자료: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KoDATA) 기업DB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산학협력 지식창출 네트워크에서 대학의 역할

○ 지역거점대학은 지역혁신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개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

- 2004년부터 최근까지 공동출원 특허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대학**은 다수의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부문의 지식 교류를 중개하는 가교역할**을 수행
- 단, 대학과 중소기업 간 산학협력 중 일회성 협력관계의 비중이 높았고, 규모 있는 기술협력은 여전히 지역 외부의 혁신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대학 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한계 노출

3. 지방대학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사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지 육성사례

○ **(차별성)** 강원대학교는 창업기업부터 성숙기업을 아우르는 전 주기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협력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전략 구상

- 2019년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정을 통해 해당 부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되면서 물리적인 환경 구비는 충족된 상황
-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서 강원대학교는 벤처투자 생태계 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 개설 등의 종합적인 사업 추진

○ **(한계)** ❶중첩 지정된 부처별 혁신사업 간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고, ❷창업보육 이후 스케일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이 부족하며, ❸지역 내 다양한 혁신거점의 연계를 촉진할 공간전략이 필요

□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텍 공유대학

○ **(차별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충북권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운영기반 구축을 지향

- 거점기관인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체계인 Bio-PRIDE 기업 트랙 등 다양한 지역산업 연계형 혁신사업 추진

○ **(한계)** ❶지속성 있는 참여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❷이해관계 조정이 복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❸교류·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부족하고, ❹지역산업 정책과의 부조화가 존재

표1 사례고찰 연구결과의 비교·종합

유형	사례	핵심 목표	지원수단 및 연계자원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거점대학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함	• 인력 양성, 사업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이 연계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신소재, 바이오, 스마트 제조분야의 신산업 육성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 제조혁신 인큐베이팅센터 등 혁신 인프라 연계 • 벤처펀드 및 계열사 협력	• 창업기업 지역 정착 및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지역인재의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 확대
	강원대	• 대학 내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산학협력 거점공간 조성	• 저렴한 임대형 입주공간 제공 • 강소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중첩된 특구제도의 특례 공유	• 지역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거점 조성을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
중소대학	경남대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혁신 • 대학과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교육부 LINC+ 사업을 통한 지역기반 리빙랩 프로젝트	•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 자본 성숙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 로컬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이슈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오송 바이오텍	• 산업수요와 연계한 지방대학 공동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 지역대학 간 지속성 있는 공유·협력체계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지역산업 취·창업구조 개선 • 대학 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역량 제고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	• 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한 청년인재의 지역 정착률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 지자체 대학 육성사업의 비효율성 개선과 총괄 지원체계 마련	• 조례 제정과 자체 재원을 통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 • 부산인재평생교육원, TP 지산학 협력센터 등의 지원기관 출범	• 대학 관련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사업효과성 개선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 마련 •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신장

□ 부산광역시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추진체계

○ **(차별성)** 대학 육성 관련 업무가 부서마다 산재해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부산시는 다양한 정책실험을 거치면서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 마련

- 부산시 지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만이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사업, 대학·청년 정주환경 지원사업, 유학생·해외교류사업 등을 담당업무로 포함하면서 관련 정책의 긴밀한 연계 촉진
- 지자체 재원으로 인재 육성과 R&D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거점과 연계사업 추진

○ **(한계)** ❶지자체의 대학 조정기능이 부족하고, ❷자체 사업의 정책기획 완성도나 지원역량에는 한계가 관찰되었으며, ❸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 경남대학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리빙랩

○ **(차별성)** 리빙랩 기반의 '지(地)-산(産)-학(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회 협력성과
-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중개하는 지역사회혁신센터를 플랫폼으로 삼아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각종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
- 개발사업으로 주민갈등이 장기화된 수정마을의 공동체회복 프로젝트를 지역민의 요청을 받아 추진해 빛나리 마을학교 추진 등의 가시적 성과 도출

○ **(한계)** ❶리빙랩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할 운영기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❷산업·기술적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협력의 범위 확장이 필요

4.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성 강화방안

○ **(지역거점 공동연구소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학과·연구실 단위로 분절된 기존 산학협력 관행을 지양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 집중
- 평가와 보조금에 의존했던 기존 접근 대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 사업방식 확대
- 지역·기관의 여건에 따라 거점연구소의 유형(연구중심형, 인력양성형, 기업지원형, 혁신인프라형)을 구분해 육성방향과 성과관리체계를 차별화

○ **(산학협력 지원기반 강화)** 부처마다 중첩된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조직을 통합해 기존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단위의 기술 지원 플랫폼 구성**

○ **(산학협력 지원기반 강화)** 부처마다 중첩된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조직을 통합해 기존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단위의 기술 지원 플랫폼 구성

□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방안

○ **(지역사회 연계형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대학이 소유한 유휴 교육재산의 임대·처분·용도변경을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과 사회혁신 공간(평생·직업교육, 로컬창업 등) 확대 조성

○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 도시 외곽 소규모 대학의 교육기능(문화·예술·디자인 관련 학과 우선)을 원도심으로 이전해 공동 캠퍼스 또는 캠퍼스타운 재생 추진

표 2 대학 유형화에 따른 주요 육성방향 비교

구분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
중점기능	국가적 기초연구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허브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운영	지역 필수 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혁신활동 거점 역할
지정방향	권역별 1~2개의 선별적 지정 후 관련 분야 연구대학과 연계 추진	각 권역의 전략산업을 고려해 특성화 대학 지정	한계대학의 용도·기능 전환 및 원도심으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과 연계해 사업 지정
연계사업	거점형 캠퍼스 혁신파크, 지역거점연구소와 함께 추진하고 관련 특구 중첩 지정·연계 운영	지역 인력 양성 플랫폼 연계, 고용기금사업과 고용 서비스 지원사업의 패키지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 추진
추진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범부처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산하 고등평생교육전문기관 육성	지자체 평생교육원과 관련 기관·사업의 통합 운영

□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대학 유형화에 따른 미션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 분류를 통해 특성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특성화 분야에 맞는 부처로 지역협력 사무를 이관해 대학 정책의 전문화 촉진

- **(연구중심대학)** 지역전략산업분야와 연계된 거점연구소 성격을 부여해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기업지원조직 통합, 캠퍼스 혁신파크 등 물리적

산학협력 기반 강화, 블록 펀딩 방식의 예산 지원 등 지원체계 차별화 추진

-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의 고등평생교육전문기관 위상을 부여해 고용기금사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역 내 유사기능을 가진 교육·훈련 기관의 통합 추진
- **(지역중심대학)** 공동 캠퍼스를 원도심으로 이전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와 연계된 필수 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기반 혁신활동의 거점기관으로 육성 → 한계대학의 용도·기능 전환과 연계해 추진

○ **(공유·협력체계강화)** 지자체 산학협력 지원체계 개편 및 대학 간 공유·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등교육법」 제2조 개정 등을 통해 공유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 간 기능 연계 및 거점화 촉진
- 대학 간의 인력 교류나 시설·장비 등의 공유를 제약하는 규제요건을 삭제해 혁신자원의 공유 활성화(조옥경 외 2021)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지역소멸 위기, 고향사랑 열풍으로 넘는다

–전라남도(2023. 12. 11.)–

- 전남도·22개 시군 기부제 시행 1년 앞 100억원 돌파
- 이색 답례품·기금사업 발굴·전략적 홍보활동 등 성과

○ 전라남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지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전남에선 목포·여수·나주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100억 원 돌파는 전남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 협력 등 밤낮없이 발로 뛴 값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 특히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행 후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과 다양한 홍보에 집중한 것도 한몫 했다.

○ 전남도는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여수·나주·해남·무안 등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도 주효했다. 전남도는 유명 연예인 등과 함께 '고향사랑 응원 릴레이'를 추진했다. 고흥군, 곡성군은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례군**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수영구와 누리소통망(SNS) 활용 상호 홍보를 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랜딩 페이지를 제작했다. **강진군**은 직원들이 플래시몹을 제작해 TV에 방영되기도 하는 등 톡톡튀는 홍보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누리집, 누리소통망, 전광판, 용산역·서울역·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 수도권 대규모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 **기부자가 전남을 선택**한 데는 **청정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한 기부자는 ‘연고가 없지만 전남의 질 좋은 쌀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장성군의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 진도군의 ‘진도북놀이 체험’ 등 이색 체험형 답례품도 인기다. 12월 현재 전남의 답례품 시장 규모는 30억 원을 넘어섰다. 향후 기부 규모가 증대되면 답례품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전남도는 도-시군 담당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및 업무 연찬 기회 마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내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15개 시군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 또 목포시·나주시·무안군·신안군과 함께 나주 혁시도시, 남악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홍보를 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서 도와 22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공동이벤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남도 공사·출연기관과 전남소방본부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지난 7일 전남 20여 공사·출연기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응원 캠페인을 펼쳐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다. 화순소방서, 나주소방서, 강진소방서도 각 지역에 기탁금을, 소방본부 및 각 시군 소방서 과장들도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 전남도와 시군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 및 기부실적 증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이벤트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 전남도의 또다른 인구대응 핵심 시책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도 불과 1년 만에 43만 명**을 넘어섰다.

○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시행 1년 만에 전남도와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달성하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을 모집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지역소멸 위험으로 적신호가 켜진 전남에 한줄기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 경남도,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의료상황실 본격 운영

-경상남도(2023. 12. 6.)-

- 전국최초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 처리 과정까지 직접 시연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경남도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될 응급의료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현장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119 응급구조와 의료기관의 협업 체계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대응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 전국 최초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응급의료상황실은 **4개팀 12명(지원단 8, 소방 4)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며, **이송과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응급의료시스템의 협업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남도는 **내년에 응급실과 응급의료상황실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경남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이 완성되면 모든 응급환자의 발생과 신고, 병원 선정과 이송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응급환자 보호자에게 이송병원을 안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 도지사는 "우리 도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상황실을 열게 됐다"며 "응급실 의료인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은 “경남은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은데 도 차원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경남형 응급통합 플랫폼 구축과 의료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병원에서는 도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 “고 말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남도지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경남·창원소방본부 관계자, 도내 응급의료기관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상황실 소개와 향후계획을 설명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선정 처리 과정까지 직접 시연했다.

3.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주민 주도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창립

-충청남도교육청(2023. 11. 27.)-

○ 충남교육청과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 창립 추진위원회는 25일(토) 부여에서, 평생학습 미래사회를 맞아 도민 누구나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이하, 포럼)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연합형 마을교육공동체포럼을 구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며, 향후 도내 15개 시군 지역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학 회원은 물론, 도내 관심 있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충남교육 의제 발굴 및 공론화 △현장 중심 마을교육 정책 방향 연구 △지역 간 마을교육 사례 공유와 연결길(네트워크) 활성화 △마을활동가 성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날 창립총회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지자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포럼 창립을 축하했다.

○ **교육청**은 '모두의 배움과 성장, 충남마을교육공동체'를 목표로 **2022년부터 행복교육지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5개 시군 현장을 찾아 민관학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에는 15개 시군의 마을교육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지원단, 지역별 담당 장학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대화마당(포럼) 창립 준비단'을 발족**해 포럼 창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

○ 이와 더불어, 주민이 주도하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도 출범해 활동을 이어왔다.

○ 추진위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교육불평등 해소와 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온마을이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자”고 포럼 창립 의도를 밝혔다.

○ 충청남도 교육감은 “마을과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연합형 도단위 포럼을 창립하는 만큼, 15개 시군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충남의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신공항 건설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가. 현 황

○ 신공항 건설 단위사업은 공항을 신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서산공항, 백령도소형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제주제2공항 및 흑산도 소형공항 등 8개의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전년대비 5,351억 9,400만원 증액된 6,718억 800만원을 편성

[2024년도 신공항 건설 단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신공항건설	92,184	136,614	671,808	535,194	391.8
가덕도신공항건설	186	13,000	536,321	523,321	4,025.5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단 운영	-	254	260	6	2.4
대구경북신공항건설	-	-	10,000	10,000	순증
서산공항건설	-	-	1,000	1,000	순증
백령도소형공항건설	-	-	4,000	4,000	순증
새만금신공항건설	1,184	13,500	6,551	△6,949	△51.5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90,350	85,474	90,000	4,526	5.3
제주제2공항 건설	463	17,286	17,286	0	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0	7,100	6,390	△710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신공항 건설 단위사업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보상비 및 설계비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233억 2,100만원 증액된 5,36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3개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100억원,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10억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4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안이 대규모로 증액 편성된바,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를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 **2024년도 신공항 건설 단위사업의 예산안**은 6,71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5,352억원(391.8%) 증액**된 것이며, 2022년도 결산액(922억원)의 약 7.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이처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대구경북신공항, 서산공항, 백령도 소형공항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2023년에 3,435억원 수준인 항공· 공항 부문의 지출이 2027년 2조 7,809억원까지 연평균 68.7% 급증할 예정이며,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된 **일반공항건설및관리 프로그램의 지출은 연평균 86.2%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2023~2027년 항공·공항 부문 및 일반공항건설및관리 프로그램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항공·공항	3,435	8,425	20,806	24,542	27,809	68.7
일반공항건설및관리	1,601	6,912	8,497	19,929	19,238	86.2

자료: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통해 공항을 적기에 준공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공항건설 단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이었으며, **5년간 평균 집행률이 39.9%**로 나타나고 있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8~2022년 신공항건설 단위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8년	335	517	10	183	325	3.0
2019년	151	329	48	20	262	31.8
2020년	1,374	573	326	127	122	23.7
2021년	1,744	1,838	870	54	914	49.9
2022년	1,849	1,831	922	296	614	49.9
5년 평균	1,249	1,217	554	189	452	39.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신공항건설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던 사유**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제주제2공항 건설 등 **주요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초기인 2014년부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 및 턴키입찰에 대한 3차례 유찰로 인해 수년간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이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률이 0~1%대로 저조하고 공사비가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수행기간 내내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환경부가 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충돌 위험성 및 소음 영향 등을 사유로 이를 반려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23년 3월에야 조건부 동의로 전력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규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신공항 건설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상 2024년 내에 예산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기본조사설계비 50억원과 실시설계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024년 11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수행 중인 신공항건설 사업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연내 설계에 착수하지 못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한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서산, 당진 등 충남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산 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여 민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과 실시 설계비 9억원으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다.
- 그런데 동 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행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81, AHP 0.456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재기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지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 재기획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통상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태로는 2024년 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가 어려울 수 있는바,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공항 적기 준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정지출이 실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국적 실태조사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여성가족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황

○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우리사회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66,936	72,596	72,073	△523	△0.7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	1,089	1,089	순증

○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예산안 10억 8,900만원은 방문상담 3억 4,500만원, 방문학습 4억 3,200만원, 프로그램운영 3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 여성가족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 1개소, 지방 3개소의 지원센터를 선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각 센터에는 방문상담지도자 4명, 방문학습교사 5명을 배치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은둔·고립 청소년 소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힐링 글쓰기 등 마음·신체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부모 자조모임 등이 있다.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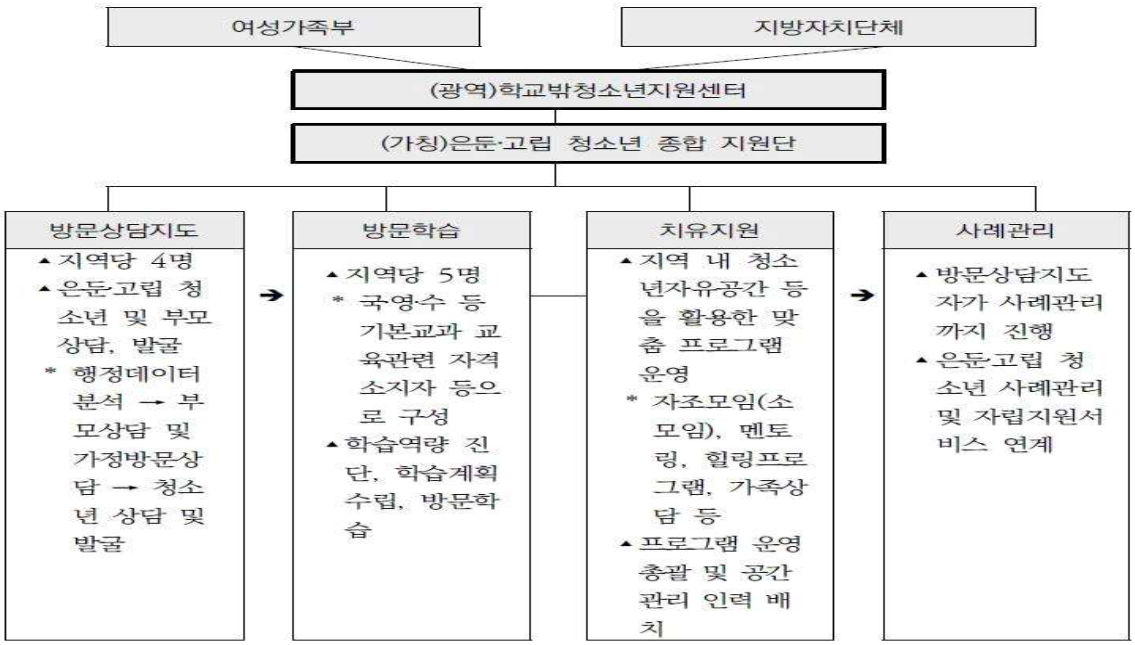
· 방문상담지도자 : 방문상담 345백만원 - (서울) 4명×1개소×3,320천원×10개월×50% - (지방) 4명×3개소×3,320천원×10개월×70% · 방문학습 : 방문학습 432백만원 - (서울) 5명×1개소×3,320천원×10개월×50% - (지방) 5명×3개소x3,320천원×10개월×70%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운영 312백만원 - (서울) 1개×120백만원×50% - (지방) 3개×120백만원×70%

□ 분석의견

○ **여성가족부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의 유효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증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은둔·고립 청소년(9~24세) 및 보호자 등 가족**이며 지역별로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발굴 및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은둔·고립 청소년의 발굴**을 위해서는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지역내 은둔·고립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발굴·상담할 수 있는 전문 방문상담지도단을 구성·운영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은둔·고립 실태 및 기간, 개인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종합지원서비스**는 은둔·고립 청소년이 학령기에 필요한 필수소양과 기초학습을 익힐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활용한 방문·자가학습 지원과, 은둔·고립 청소년이 함께 모여 상호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치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사례관리**는 종합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로 나오게 된 은둔·고립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를 이어나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체계(안)]



자료: 여성가족부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2019. 10.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 4.부터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을 실시 중이고 민간영역에서는 사단법인 씨즈에서 은둔·고립 청년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두더지땅굴을 운영 중이다.
- **해외사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히키코모리 특화 지원을 위한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히키코모리에 특화한 전문적 상담창구인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설치·운영 중이다. 2021년 기준 총 79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소지한 지원 코디네이터가 상담 지원 및 지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2023. 9. 6.)하면서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를 약 28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립·은둔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 고립·은둔의 규모(비중),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국민 실태조사를 제안**하였다.
- 국민통합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한 실태 파악을 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추진을 제시하였다.

- 현재 은둔·고립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파악된 바 없으나,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인원 중 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 공적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은둔·고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미등록인원(2022년 기준 1만 6천여명)을 기초로 은둔·고립 청소년을 추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의 유효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증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교부세 차(차)년도 감정산 방안 고려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 황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며,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이 중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2024년도 예산안은 내국세 추정액과 법정률을 토대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6조 9,992억 2,900만원이 감액된 61조 7,06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통교부세	65,517,054	66,644,552	59,855,301	6,789,251	△10.2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10,520	824,469	740,478	83,991	△10.2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02,630	206,117	185,119	20,998	△10.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13,150	1,030,586	925,597	104,989	△10.2
합 계	67,543,354	68,705,724	61,706,495	6,999,299	△10.2

자료: 행정안전부

□ 분석의견

○ **2023년도 세수 결손분을 반영하여 2023년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과 차차년도 예산에 감정산분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차년도 세수 감소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보통교부세는 약 6조 7,892억원 감액된 59조 8,553억원, 특별교부세

는 2,129억 7,800억원 감액된 1조 8,512억원을 편성하였다.

- **금년도에도 55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불용하여 미교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9.18., 정부합동), 내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약 10조 6,000억원의 미교부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예상내역]

(단위: 백만원, %)

	2023년 예산(A)	예상액(B)	증감액	
			B-A	C-A
내국세	358.0	303.1	△54.8	△15.3
정률분 교부세	68.7	58.1	△10.6	△15.4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당해연도에 세입 경정 없이 지방교부세를 감정산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집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정 혹은 중지해야 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해 정부는 ① 「국가재정법」제43조에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례적이기는 하나 실제 연도중 미교부가 사례가 있으며, ②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 2조 6,000억원을 인수할 계획이고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액을 감안하면 약 13조원의 여유재원이 있어 이를 활용해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첫째, 「국가재정법」제43조**에서 분기별 예산배정을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상은 정부재정사업**이며, **지방교부세와 같이 법정의무지출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도 함께 조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2013년도 미교부 사례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 경정에 따라 감액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감액하지 않고 차차년

도로 유보하여 감액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방교부세법**」 **제5조2항이 개정**되어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이러한 **교부세 조절은 세입 경정을 전제**로 한다.

- **둘째**, 지방채 인수를 통한 재정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인수할 총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채 발행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2020년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감정산**하였으며 당시 1.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계획했으나 실제 인수액은 8,919억원 규모이다. 더불어 이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본청의 지방채가 6,232억원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 또한 실제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 논의 이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규모의 높은 증가율**은 그 자체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며 지방채 대기물량이 많아져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환능력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제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채를 통한 재원 확보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일반적으로 지방채의 경우 국고채 금리에 10~22bp(1bp=0.01%p) 정도를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안정화계정의 적립액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약 22.7조원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최대 50~70%까지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상하면 **약 13조원 이상의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31곳(12.7%)은 적립액이 없거나 20억 미만이며,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곳이 12곳, 100억원 이상 500억 미만이 72곳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적립금 없음	20 미만	20~100미만	1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 이상	합계
지자체 수	19	12	12	72	61	67	243
비율	7.8	4.9	4.9	29.6	25.1	27.6	100

주: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적립액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인천광역시 등 상위 10개 자치단체의 적립액이 총 6.3조원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의 적립금이 3.3조원으로 243개 자치단체 적립액의 14.4%를 차지한다. 즉, **동 기금의 여유재원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적립액에 의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는데 통합계정은 사실상 차입의 개념으로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하므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예치금이나 이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10월초 기금 여유재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답변에 근거하여 17.6조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금액은 가용재원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현 기금 예치금의 총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총액은 2조 3,585억원(10월초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과반인 140개 자치단체가 잉여금이 없거나 10억원 미만** 수준이며, 이 중 **46개 자치단체는 오히려 적자** 상태이다. 적자 상태인 지방자치단체들 중 76%는 지방교부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지역이다.
- 종합하면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전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채 인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활용 독려 방안은 이러한 자치단체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2023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해 계획된 예산대로 교부**하고 **2024년도와 차차년도 예산에 감정산분을 반영하여 감액**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법인 등에 대한 제재 미조치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10.)–

□ 감사배경 및 목적

○ 청구인(교사 A 외 695명)은 2023. 4. 1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성적 조작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장자격 부여의 적정성** 등 2개 사항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

○ 감사원은 2023. 7. 11. 위 2개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미이행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장자격 부여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1개 사항은 같은 규정 제20조에 해당하여 감사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미실시 사항과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회신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는데도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둠

□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 감사원은 2023. 8. 2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8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감사원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2023. 11. 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 감사대상 업무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립학교 등에 대한 사

후관리와관련한 주요 추진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립학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주요 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9. 8. 13.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와 개나고등학교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 개나고등학교 교원 징계(17명), 비위통보(3명), 경고·주의(30명), 퇴직불문(7명) 등 처분요구
2019. 9. 11.	■ 개나고등학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재심의(32명) 신청 - 징계대상자 4명 인용(감경), 징계대상자 13명 등 총 28명 기각
2020. 1. 6.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1차)
2020. 9. 29.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2차)
2021. 3. 12.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3차)
2021. 6. 17.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4차)
2021. 9. 27.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5차)
2022. 1. 18.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처분요구 이행촉구(6차)
2022. 2. 8.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22년 제1회 교원양성위원회 개최 - 학생 성적 채점 부적정 등으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교사 B, C에 대해 교장자격 부적격 의결
2022. 4. 21.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개가에 과태료(300만 원) 부과처분
2022. 6. 20.	■ 학교법인 개가에서 과태료(309만 원) 납부
2022. 7. 4.	■ 개나고등학교의 징계요구 대상자 징계시효 만료
2022. 8. 10.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22년 제4회 교원양성위원회 개최(B, C 부적격 의결)
2023. 2. 13.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23년 제1회 교원양성위원회 개최(B, C 적격 의결)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2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처분요구 미이행 학교법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미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원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나 위 학교 설치법인인 **학교법인** ㉮㉮에서 **징계시효 도래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실시 및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 정직 3개월의 처분요구를 받은 교사 2명이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를 사유로 교장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 초래**

○ **시정명령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미수립**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감점 부여기준을 수립**하여 교육청의 시정명령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예산편성을 중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 **예산편성 감점 부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촉구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지원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한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일실**

○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 예산지원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처분요구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미실시 관련)**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사립학교의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버려두어 징계요구 대상자의 징계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시정명령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미수립 관련)**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학기관에 대해 예산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